

「2026년도 모범 장애경제인 및 유공자」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

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장애인기업 육성에 기여한 모범 장애경제인 및 유공자를 발굴·포상하여 장애인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「2026년도 모범 장애경제인 및 유공자」 포상 신청·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6월 12일
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

1 포상목적

- 장애인기업 육성·발전에 공로가 있는 모범 장애경제인 및 유공자 포상을 통하여 장애인기업의 성과 및 사회적 가치 확산

2 포상 종류 및 규모

◆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17점, 지식재산처장 5점으로 총 22점

분야	훈격		계
	중소벤처기업부장관 (장관급)	지식재산처장 (차관급)	
① 모범 장애경제인	15	5	20
② 장애인기업 육성 유공자	2	-	2
합계	17	5	22

○ 포상 분야 및 대상

분 야	대 상	주관기관
① 모범 장애경제인	장애경제인(장애인기업 대표자)	장애인기업종합 지원센터
② 장애인기업 육성 유공자	장애인기업 지원 기관, 단체, 기업 등의 소속 임직원	

○ 분야별 신청자격

분 야	신청자격
① 모범 장애경제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경영 혁신, 사회공헌, 고용 창출 등을 통해 국가발전 및 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한 장애경제인으로 3년 이상 장애인기업을 경영한 자
② 장애인기업 육성 유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장애인기업 육성, 정책·제도 발전, 연구 등에 기여한 기관·단체·학계·기업 등의 임직원 등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* 현 재직기관 외 장애인기업 육성 관련 기관의 경력 합산 가능

3 | 신청 및 접수

○ (신청기간) 2026. 6. 12.(금) ~ 7. 31.(금), 18:00까지

○ (접수방법) 전자우편(이메일) 또는 전자문서 접수

분 야	접수방법	접수처
① 모범 장애경제인	전자우편(이메일)	hsy@debc.or.kr
② 장애인기업 육성 유공자	전자우편(이메일)	
		전자문서

○ (문의처)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외협력부(02-2181-6528)

4

추진일정

신청·접수	▶	요건확인 심사평가	▶	후보추천	▶	공개검증	▶	공적심사 위원회
6월~7월		8월		8월		9월		10월

*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심사평가 및 후보자 추천 : 2026. 6~8월

- 분야별 포상지침에 의거하여 주관기관이 신청·접수자에 대한 요건 검토 및 서류·현장·종합 평가 등 실시, 중소벤처기업부로 후보자 추천

□ 공개검증 : 2026. 9월

-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조회, 사전 공개 및 의견수렴 등 공개 검증 실시

* 결격사유 : 범죄경력, 산업재해, 불공정행위, 임금체불, 세금 체납 등

□ 공적심사위원회 : 2026. 10월

- 공개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수상 후보자 심사

□ 포상 수여 : 2026. 11월

- 2026년 전국장애경제인대회 행사에서 수여

5

유의사항

- 공적기간, 재포상 금지 기간, 추천제한 기간은 포상 접수 마감일 (2026. 7. 23.)을 기준으로 산정
- 필수항목 작성·제출 누락, 증빙서류 유효기간 만료 등 정해진 양식과 기준에 맞지 않게 제출된 서류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
 - 1회에 한해 접수 담당자가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
- 증빙서류별로 안내된 발급 기준에 맞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는 적격서류로 인정하지 않음
- 신청 자격, 절차, 유의사항 등 공고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
- 신청접수 현황 또는 계획의 변경에 따라 연장 공고할 수 있음

참고

2026년 전국장애경제인대회 분야별 제출 서류

1 모범 장애경제인

필수 작성 서류	1	포상 신청서(서식1)			
	2	공적조서(서식2)			
	3	공적약술서-모범장애경제인 부문(서식3-1)			
	4	포상에 대한 동의서(서식4)			
	5	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(서식5)			
필수 증빙 서류	6	사업자등록증명원(최근 3개월 이내 발급) · 발급처 - 방문: 세무서 및 시청·동·면사무소 - 온라인: 홈택스(www.hometax.go.kr, ☎126)			
	7	장애인기업확인서(포상 수여 예정일 2026. 11. 18.까지 유효한 서류) · 발급 방법 - 공공구매종합정보망(www.smpp.go.kr, ☎1588-6072) 회원가입 →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 →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자가 진단 → 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			
	8	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(포상 공고일 이후 발급) · 발급처 - 국세: (방문) 국세청, 세무서, (온라인) 정부24(plus.gov.kr/, ☎110), 홈택스(www.hometax.go.kr, ☎126), - 지방세: (방문) 시·군·구청 및 읍·면·동사무소, (온라인) 정부24, 위택스(www.wetax.go.kr/, ☎110)			
	9	2024~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· 발급처: 국세청(홈택스 서비스 가능) 또는 세무서			
	10	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(최근 3개월 이내 발급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상시근로자 없는 경우</td> <td>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· 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co.kr, ☎1577-1000)</td> </tr> <tr> <td>상시근로자 있는 경우</td> <td>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 · 발급처: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www.4insure.or.kr), 고용센터(www.ei.go.kr, ☎1350), 국민연금공단(www.nps.or.kr, ☎1355),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, ☎1577-1000), 근로복지공단(www.kcomwel.or.kr, ☎1588-0075)</td> </tr> </table>	상시근로자 없는 경우	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· 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co.kr, ☎1577-1000)	상시근로자 있는 경우
상시근로자 없는 경우	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· 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co.kr, ☎1577-1000)				
상시근로자 있는 경우	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 · 발급처: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www.4insure.or.kr), 고용센터(www.ei.go.kr, ☎1350), 국민연금공단(www.nps.or.kr, ☎1355),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, ☎1577-1000), 근로복지공단(www.kcomwel.or.kr, ☎1588-0075)				

추가 증빙 서류	11	<p>[수출실적 기재 시 필수] 2024~2025년 수출실적 증빙자료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직접수출</td> <td> <p>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실적확인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발급처: 한국무역통계 정보포털(www.bandtrass.or.kr, ☎02-2140-0740), 한국무역협회(webdocu.kita.net, ☎1566-5114)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간접수출</td> <td> <p>한국무역정보통신(KTNET) 또는 은행(은행장 직인 포함)에서 발급 받은 수출실적확인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발급처: 한국무역정보통신(www.ktnet.com, ☎1566-2119) / 각 은행 </td> </tr> </table> <p>· 최근 3개월 이내 발급</p>	직접수출	<p>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실적확인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발급처: 한국무역통계 정보포털(www.bandtrass.or.kr, ☎02-2140-0740), 한국무역협회(webdocu.kita.net, ☎1566-5114) 	간접수출	<p>한국무역정보통신(KTNET) 또는 은행(은행장 직인 포함)에서 발급 받은 수출실적확인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발급처: 한국무역정보통신(www.ktnet.com, ☎1566-2119) / 각 은행
	직접수출	<p>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실적확인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발급처: 한국무역통계 정보포털(www.bandtrass.or.kr, ☎02-2140-0740), 한국무역협회(webdocu.kita.net, ☎1566-5114) 				
	간접수출	<p>한국무역정보통신(KTNET) 또는 은행(은행장 직인 포함)에서 발급 받은 수출실적확인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발급처: 한국무역정보통신(www.ktnet.com, ☎1566-2119) / 각 은행 				
	12	<p>[지식재산권 실적 기재 시 필수] 서류에 기재한 지식재산권 사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내외 규격, 특허증, 디자인등록증, 상표등록증, 실용신안등록증 등 · 포상 수여 예정일(2026. 11. 18.)까지 유효한 등록증에 한하여 인정 				
	13	<p>[인증 실적 기재 시 필수] 서류에 기재한 인증서 사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ISO 경영시스템 인증, HACCP, KC, KS, K마크, Q마크(품질인증), 녹색기술, 조달우수제품지정증서,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, CLEAN 사업장, 이노비즈·메인비즈·벤처기업 확인서 등 · 포상 수여 예정일(2026. 11. 18.)까지 유효한 인증서에 한하여 인정 				
	14	<p>[장애인 고용 실적 기재 시 필수] 장애인 고용 증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당 근로자의 장애인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·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				
	15	<p>[표창 이력이 있는 경우 필수] 표창장 사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훈장, 포장, 대통령·국무총리·장관 표창 등 				
16	<p>기타 공적으로 기재한 사항에 대한 사실 증빙 및 참고 자료 일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상장, 기부금 영수증, 위촉장·임명장·활동증명서, 언론보도 등의 사본 -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(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제외)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					

2 장애인기업 육성 유공자

필수 작성 서류	1	포상 신청서(서식1)
	2	공적조서(서식2)
	3	공적약술서-장애인기업 육성 유공자 부문(서식3-2)
	4	포상에 대한 동의서(서식4)
	5	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(서식5) *신청 담당자 작성 및 서명날인
필수 증빙 서류	6	재직증명서 및 (경력 합산 시)경력증명서 · 재직증명서의 경우 포상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
	7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· 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co.kr , ☎1577-1000)
	8	현 소속 기관(단체) 사업자등록증명원(최근 6개월 이내 발급) ·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의 경우 고유번호증 (비영리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)
추가 증빙 서류	9	[자격증 기재 시 필수] 자격증 사본(최근 5년 이내 취득 건에 한함) · 현재 업종 및 공적과 관련된 5년 이내 취득 자격증만 인정
	10	[교육 실적 기재 시 필수] 수료증 사본(최근 5년 이내 이수 건에 한함) · 현재 업종 및 공적과 관련된 5년 이내 이수 교육만 인정 · 학위 취득(학사·석사·박사) 제외
	11	[표창 이력이 있는 경우 필수] 표창장 사본 · 훈장, 포장, 대통령·국무총리·장관 표창 등
	12	기타 공적으로 기재한 사항에 대한 사실 증빙 및 참고 자료 일체 · 장애인기업 육성 관련 실적 보고서, 상장·감사장, 기부금 영수증, 자원봉사 실적확인서, 언론보도 등의 사본 -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(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제외)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